

4-8 장학금 지급 규정

1992. 3. 1. 제정
2023. 5. 9. 개정

주무부서 : 학생처 학생지원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02.01.>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, 교외장학재단 및 관계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장학금액) ① 교내장학금의 총액은 매 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.
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별 지급액은 해당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개정 2012.02.01.>

제4조(장학금의 구분)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② 교내장학금은 교비에 의해 편성된 장학금을 말한다.
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, 공공기관 및 기타단체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되고 지급대상이 지정된 장학금을 말한다.

제2장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

제5조(장학금 지급대상) 본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.

1. 본 대학교 재학생(단기과정 포함) <개정 2012.02.01.>
2. 외국대학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자 <개정 2012.02.01.>
3. 본 대학교 대학원 수료생으로 연구등록을 필한 자(단, 재학연한초과자 제외) <신설 2012.02.01.>
4.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자 <신설 2012.02.01.>

제6조(장학금 지급기준) ①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
2.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
3.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법령 및 협약 등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

5. 해당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<개정 2011.03.01, 2012.02.01.>
 6.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<신설 2011.03.01, 개정 2012.02.01.>
 7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<신설 2011.03.01.>
- ②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출연자의 출연목적에 적합한 경우로 하며, 지급방법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03.01, 2012.02.01.>
-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장 장학위원회

제7조(중앙장학위원회) ① 본 대학교 장학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장학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02.01.>

1. 위원장 : 교학부총장 <개정 2010.03.01, 2011.03.01, 2016.12.20.>
2. 당연직위원 : 대학원장, 단과대학 학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교학처장, 입학처장, 총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국제처장 <개정 2010.03.01, 2011.03.01, 2012.02.01., 2016.12.20., 2021.05.17.>
3. 간사 : 학생지원팀장(서울, 다빈치) <개정 2010.03.01., 2023. 5. 9.>

② 중앙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02.01.>

1. 장학금 지급규정 심의 <신설 2012.02.01.>
2. 장학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 <개정 2012.02.01.>
3.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<개정 2012.02.01.>

제8조(대학원장학위원회) ① 본 대학교 일반 및 전문, 특수대학원의 장학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 장학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대학원

가. 위원장 : 대학원장

나. 위원 : 대학원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전문, 특수대학원

가. 위원장 : 해당 대학원장

나. 위원 :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대학원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2.02.01.>

1. 기본 장학시책에 관한 심의
2. 장학생 지도에 관한 심의
3. 기타 해당 대학원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

[본조 전문 개정 2016.12.20.]

제9조(단과대학장학위원회) ① 각 대학별 장학생 선정을 위한 대학별장학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: 해당 대학장

2. 당연직 위원 : 해당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<삭제 2016.12.20.>

③ <삭제 2016.12.20.>

[본조 전문 개정 2016.12.20.]

제10조(의결) 각 장학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2.02.01.>

제4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

제11조(장학금 신청)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중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금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 관련서류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03.01, 2012.02.01.>

제12조(장학금 지급기간)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,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. <개정 2011.03.01, 2012.02.01.>

제13조(장학금 지급방법) 제14조 2항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제외한 각종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,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 환불한다. <개정 2010.03.01, 2011.03.01, 2012.02.01.>

제14조(중복지급 금지) ① 장학금의 중복지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. <개정 2012.02.01.>

② 전항 단서규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03.01, 2012.02.01.>

제15조(장학금 지급제한)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.

1. 학칙 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<개정 2012.02.01.>

2.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

3. 학업성적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미달된 자

② 장학금은 수업연한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수업연한 초과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3.01., 2016.12.20.>

제16조(장학금지급 중지 및 회수) 장학금 수혜 학생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02.01.>

1.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
2.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<신설 2012.02.01.>

3. 당해학기에 장학금 수혜 후 제적(자퇴) 또는 휴학한 경우. 다만, 성적장학금에 한하여

복학학기에 인정한다. <신설 2016.12.20.>

4.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된 경우 <개정 2012.02.01.>

제17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장학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03.01, 2012.02.01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199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1994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(경과조치) 본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장학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.
- ⑦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⑧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2.02.01.>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에 적용한다. 단, 개정 규정 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16.12.20.>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1.05.17.>

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3. 5. 9.>

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